

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59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4년12월18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장인홍 의원이 발의한(찬성: 13명) 의안번호 제174호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과 김종욱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4호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을 제25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(2014. 12. 18)에서 병합심사 한 결과,
-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수정·보완한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」 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학교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등이 학생 및 이용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게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(2014. 7. 7)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며,
- 학교 옥상 임대를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사용면적과 공시지가 아닌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자 함.

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“사회적협동조합”이 학생 및 이용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학교매점,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 18조).
- 나.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면적기준과 공시지가가 아닌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대부요율을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제7항).
- 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함(안 제30조).
- 라.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중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8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 42조제5항).
- 마. 안 제26조제7항의 적용시기를 규정함(안 부칙 단서)

#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18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사용목적
2. 사용기간
3. 사용료
4. 사용료 납부방법
5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
6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
7. 허가조건

②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대부요율을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.

제30조 중 “100분의 10 이상” 을 “100분의 5 이상” 으로, “100분의 10 을 초과한” 을 “100분의 5를 초과한” 으로 한다.

제4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제7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(사용·수익허가)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용목적</li> <li>2. 사용기간</li> <li>3. 사용료</li> <li>4. 사용료 납부방법</li> <li>5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</li> <li>6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</li> <li>7. 허가조건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&lt;신 설&gt;</p>	<p>제18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용목적</li> <li>2. 사용기간</li> <li>3. 사용료</li> <li>4. 사용료 납부방법</li> <li>5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</li> <li>6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</li> <li>7. 허가조건</li> </ol> <p>②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.</p>
<p>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⑥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&lt;신 설&gt;</p>	<p>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대부요율을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.</p>
<p>제30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<u>100분의 10 이상</u> 증가한 경우, <u>100분의 10을 초과한</u>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</p>	<p>제30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<u>100분의 5 이상</u> 증가한 경우, <u>100분의 5를 초과한</u>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</p>
<p>제42조(변상금의 부과) ① ~ ④ (생략)</p>	<p>제42조(변상금의 부과) ① ~ ④ (현행과</p>

<신 설>

같음)

⑤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.